

목 차

정 관	1
-----------	---

정 관

I. 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제 2조	목적
제 3조	본질의 소재지
제 4조	광고방법
II. 제 2장 주식	
제 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제 6조	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제 7조	일주의금액
제 8조	삭제
제 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 9조	우선주식의수 및 내용
제 10조	신주인수권
제 11조	삭제
제 12조	주식매수선택권
제 13조	신주의배당기산일
제 14조	주식의 소각
제 15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6조	삭제
제 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III. 제 3장 사채	
제 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20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 21조	교환사채의 발행
제 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IV. 제 4장 주주총회	
제 23조	소집시기
제 24조	소집권자
제 25조	소집통지
제 26조	소집지
제 27조	의장
제 2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9조	주주의 의결권
제 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 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32조	의결권의 행사
제 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 3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V. 제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절	이사
제 35조	이사의 수
제 36조	이사의 선임
제 37조	이사의 임기
제 38조	이사의 직무
제 39조	이사의 의무
제 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2절	이사회
제 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 42조	이사회 결의방법

제43조	이사회 의의사록
제44조	위원회
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제 3절	대표이사
제46조	대표이사의 선임
제47조	대표이사의 직무
VI.제 6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9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50조	삭제
제5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52조	감사록
제53조	삭제
VII.제 7장	회계
제54조	사업연도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6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7조	이익금의 처분
제58조	이익배당
제59조	배당금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60조	분기배당

제 1 장 총 칙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신라섬유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ILLA TEXTILE.CO.LTD 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자수직물제조가공 및 판매업
- 2.직물제조가공 및 판매업
- 3.수출입업
- 4.부동산임대업
- 5.컴퓨터조립제작 및 판매업
- 6.컴퓨터알선업 및 도.소매업
- 7.편조업 및 판매업
- 8.봉제의복제조업 및 판매업
- 9.의류무역 및 중개업
- 10.주택건설사업
- 11.대지조성사업
- 12.건축,토목사업
- 13.부동산매매 및 개발업
- 14.분양대행업
- 15.도.소매업
- 16.통신기기 및 휴대폰판매업
- 17.자동차 신품 판매업
- 18.중고 자동차 판매업
- 19.통신 약세사리 및 주변장치 제조 판매업
- 20.위 각 호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 3조(본점의 소재지) ①이 회사의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정,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illatextile.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삼천만(130,000,000)주로 한다.

제 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 오천주(1주의 금액 오천원 기준)로 한다.

제 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제 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제 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조(우선주식의 수 및 내용)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구십만(900,000)주로 한다.

③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9%로 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⑦우선주식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 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할 수 있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삭제

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 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또는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한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60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이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35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삭제

③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41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감사위원회
 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가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록)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삭제

제 7 장 회 계

제54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9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0조(분기배당)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라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훈

부 칙			
일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1976.03.08	제정		
1986.03.01	개정		
1994.05.31	개정		
1997.03.12	개정		
2001.03.23	개정		
2008.03.11	개정	제2조(목적)1~6 기존과 동일 7.편조업 및 판매업 8.봉제의복제조업 및 판매업 9.의류무역 및 증개업 10.주택건설사업 11.대지조성사업 12.건축,토목사업 13.부동산매매 및 개발업 14.분양대행업 15.도.소매업 16.통신기기 및 휴대폰판매업	사업 목적 추가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 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제41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회일 3일전에서 회일5일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 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표 준 관 으로 문 구 수 정 및 조 항 삽 입
2009.03.03	개정	제2조(목적) 1~16.(현행과 같음) 17.자동차 상품 판매업 18.중고 자동차 판매업 19.위 각 호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사업 목적 추가
		제9조(우선주식의 수 및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삭제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5조(소집통지) 제60조(분기배당)	표 준 관 으로 조 문 정 비 근 거 마 련 · 조 문 삭 제 · 조 문 변 호 변 경
2011.03.07	개정	제2조(목적) 1~18.(현행과 같음) 19.통신 약세사리 및 주변장치 제조 판매업	사업 목적

		20.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추가
2016.02.15	개정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삼천만(130,000,000)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주식 분할 반영
2018.03.12	개정	제4조(공고방법) 제35조(이사의 수) 제37조(이사의 임기) 제39조(이사의 의무) 제41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42조(이사회 결의방법)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제44조(위원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9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제50조 삭제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52조(감사록) 제53조 삭제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조문 변경 · 조문 추가 · 조문 삭제
2019.03.11	개정	제4조(공고방법) 제8조 삭제 제8조의2(주권 등의 전자등록)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조문 변경 · 조문 추가 · 조문 삭제

